

仲裁研究, 第 16 卷 第 2 號
2006년 8월 1일 발행, pp.3-49

논문접수일 2006. 6. 30
제재확정일 2006. 7. 18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김 상 호** Sang-Ho Kim

〈목 차〉

- I. 서 론
- II. 6.15 공동선언 이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의 노력
- III. 개성공단과 상사분쟁의 해결
- IV.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재정운영
- V. 남북 중재규정 제정과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현안과제
- VI. 결 론

주제어 : 분쟁해결, 남북중재위원회, 남북중재규정, 개성공단, 중재

* 이 논문은 2005년도 산학협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 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동년 12월 16일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남북한 당국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분쟁해결합의서"라 한다),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라 한다),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 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경 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들 4개 합의서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발효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2003년 8월 20일자로 발효하였다¹⁾.

이어 동년 10월 12일에는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을 전담할 중재기 구의 창설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중재위원회합의서"라 한다)에 합의하였고 동 합의서도 2005년 8월 1 일자로 발효되었다²⁾

중재위원회합의서의 체결 근거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 협 4개 합의서 중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투자보장합의서'이다.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³⁾ 건설사업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

- 1) 4개 합의서의 남측 서명자는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인 통일부장관 박 재규이며 북측 서명자는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인 내각책임참사 전금진이다. 상사분쟁해결합의서는 전문, 19조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전문 및 14조 및 부록으로 구성된 이 합의서의 남측 서명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광림(재정경제부 차관)이며, 북측 서명자는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 최영건(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이다.
- 3)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개성공단이라는 용어대신 '개성공업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성공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들 용어를 의미상의 차이가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동력이 결합하는 상생의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을 시장경제의 학습장으로 유도하는 기능과 함께 군사적 대치 구역인 개성지역의 개방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은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의선의 경우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산업단지 800만평 중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300여개 기업에 5만 여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현재 2만8천여평에 건설되고 있는 15개 시범업체의 생산품 및 향후 입주기업의 증가에 따라 생산제품도 다양해질 것이고 이들 제품의 국내 반입이나 외국 수출에 따라 다양한 상사분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하여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중인 한·싱가포르FTA(자유무역협정)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교역 및 대북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한 남한의 기업이 진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외국수출에 따라 외국의 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 등 상사분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남북한이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현안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에 교역과 대북 투자가 확대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남북한 간의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먼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당국이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체결한 관련 합의서의 내용을

4) 이종근,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전략”, 한국수출아카데미 주관 논문집(한국수출아카데미 창립7주년기념 개성공단생산품 수출전략세미나, 2005. 6. 7,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p.7.

고찰하는 한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한 간에 최대의 경협사업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분쟁해결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남북한이 실행해야 할 과제와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II. 6.15공동선언 이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

1. 개 관

남북간에 체결된 4개 경협합의서는 6.15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 후속조치에 속한다. 특히 이를 합의서 중 분쟁해결합의서는 남북 교역과 대북 투자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간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1988년 남북 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남북의 중재기관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다. 이는 남북한 거래당사자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남한 측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교역활성화에 있어 최대 장애요인의 하나였다.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업무를 관리하는 중재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창설을 위한 중재위원회합의서의 체결근거는 분쟁해결합의서와 투자보장합의서이다.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 또한 투자보장합의서에서는,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협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가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아래에서는 6.15공동선언이후 남북 당국간에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체결된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분쟁해결합의서의 체결

(1) 분쟁해결의 원칙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북간에 발생하는 상사분쟁은 먼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의 상사분쟁은 중재 전(前) 단계인 '협의'단계에서 많이 해결될 것이고 분쟁금액이 크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협의단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중재를 통해 최종

5)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제4항.

6)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

7) 분쟁해결합의서 제1조.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판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⁸⁾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선언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거래당사자들이 마음 놓고 상거래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중재위원회의 설립 및 관장업무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⁹⁾

남북한간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적 중재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중 분쟁처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 및 경협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 업무이다.

이는 남북간 교역 및 경협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 업무이다. 분쟁의 당사자는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이다. 아직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분쟁당사자로 '당국'을 명시한 것은 국영무역이 중심인 북한의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남북간 교역에서 우리 기업 측에서 제기한 불만들을 보면, 대북 교역에서 북한상사나 북한측 중개상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본

8) 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9) 분쟁해결합의서 제2조,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제1항.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측의 납기위반과 품질위반이 계약위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둘째, 투자분쟁의 중재, 조정 및 관련 업무이다.

이는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이다. 이는 동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남북한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당국)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먼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면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자자'란 남북한 어느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①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과 ②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¹⁰⁾

투자보장합의서는 '투자자산'을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주요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즉, ①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②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③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④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⑤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⑥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1항). 또한 투자보장합의서에서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10) 분쟁 해결합의서 제2조-제4조.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¹¹⁾

앞으로 남북간의 투자분쟁은 남북한의 일방 정부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하는 분쟁들이 될 것이나 가장 중요성을 가지는 분쟁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국유화나 수용에 따른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즉 수용)를 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수용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였다.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자체 없이 지불도록 했으며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도록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도록 하였다^{12).}

셋째, 중재관련규정의 제정 등의 업무이다.

상설중재기관은 스스로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다. 분쟁해결합의서에서 중재위원회가 상설중재기관으로서 그 자신의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남북간의 모든 상사분쟁이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제도적 중재(institutional

11) 투자보장합의서 제1조 제3항.

12) 투자보장합의서 제4조. 우리나라가 과거 소련과 체결하여 러시아로 승계된 한·러 투자보장협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수용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수용일로부터 2월내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arbitration)로서 해결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간 상사분쟁은 중재위원회에서 제정한 중재규칙에 따라 모든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배제한 임시 내지 특별중재(ad hoc arbitration)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중재인 선정업무이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중재인의 선정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서 남북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도 필요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¹³⁾

그리고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와 당사자에 의해 중재인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여 해당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따라서 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남북 양측의 기존 중재기관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중재인 명부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3. 중재위원회합의서의 체결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2일 분쟁해결합의서의 후속 합의로 중재위원회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은 상기한 바와 같다. 중재위원회합의서가 2006년 8월 1일자로 발효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재정운영과 함께 남북중재규정의 제정이 당면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하기 IV장에서 별도로 고찰하기로 한다.

13) 분쟁해결합의서 제5조.

14) 분쟁해결합의서 제10조 제3항.

III. 개성공단과 상사분쟁의 해결

1. 개성공단 개관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해 기존의 경제정책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데 이어 9월에는 신의주를, 11월에는 금강산과 개성을 각각 특구로 지정, 선포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진·선봉을 포함하여 모두 4개가 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과 함께 남북간 3대 경제협력사업의 하나이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와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법¹⁵⁾을 제정, 공포하였고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규모는 2,000만평(공단 : 800만평, 신도시 : 개성시가지 400만평을 포함한 1,200만평) 규모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3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공단건설이 완료되면 총 남한의 입주기업은 2,000여개이며 채용인원은 35만명(북측)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⁶⁾

개성공단은 2004년 4월 23일 협력사업 승인과 동시에 2만8천평의 시범단지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6월 30일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12월 말까지 총 8개 남한기업이 공장건설에 착수하였으며 이 중 (주) 리빙아트 개성공장은 12월 15일 첫 제품 생산 기념식과 출하식을 갖고 여기에서 생산된 냄비 1,000셋트는 7시간 만에 국내로 반입, 백화점에서 판매되었다. 2004년 시범단지 공장건설에 착수한 8개 기업 중 2개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동생산을 개시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이 개발에 합의한지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¹⁷⁾ 현재 28,000여평에 건설되고 있는 시범업체 중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3440호(2002.11.20).

16)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2005. 6월, Ver 2.2) 참조.

리빙아트, 에스제이테크 2개업체는 2004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신원 등 10개 업체는 2005년 8월 중에, 용인전자 등 3개 업체는 2005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다.

2. 개성공업지구법의 주요내용

북한이 개성공단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5장, 4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⁸⁾ 제1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를 북한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가의 범위로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며 투자가는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 또한 투자가는 근로자 채용, 토지이용, 세금에서 특혜를 부여받는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대한 최상급 기관으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하 ‘중앙지도기관’으로 칭함)이 있고 하위 기관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 칭함)을 두고 있다. 중앙지도기관은 관리기관을 통해 공업지구사업을 지도한다.

제7조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투자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며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산의 국유화나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⁹⁾

17) 최수영, “남북 경협 활성화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중재학회 주최 논문집(2005년도 남북 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 2005.8.23-25, 금강산 관광호텔), p.24.

18) 개성공업지구법 제1조-제9조.

중앙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해 개발업자를 지정한다. 중앙지도기관은 지정된 개발업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토지의 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 발급일로부터 50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²⁰⁾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적으로 나누어 할 수 있는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 등) 건설 후 투자기업을 배치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²¹⁾

제3장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²⁾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지도기관과 관리기관이 한다. 관리기관은 분기별로 관리운영사업에 관하여 중앙지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에서는 관리기관은 개발업자(현대아산)가 추천하는 인사와 중앙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였다.

공업지구에서의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제33조에서는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개성공업지구 이외의 북한지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창설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²³⁾

개성공업지구 투자가가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관리기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으로

19) 개성공업지구법 제10조·제20조.

20) 이 규정에 따라 중앙지도기관은 현대아산을 개발업자로 지정하였고 현대아산은 2002년 12월 26일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을 취득하였다.

21)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2004년 6월 30일 시범단지 28,000평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고 7월 22일 리빙아트 등 15개 입주기업과 입주계약을 완료(평당 14만 9천원)하고 9월 14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2) 개성공업지구법 제21조·제34조.

23) 개성공업지구법 제35조·제45조.

승인이나 부결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북한인 노동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인원, 특수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지도기관과 협의하여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업지구 투자기업은 공업지구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북한내에 판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문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 즉 개성공업지구내의 상품가격과 봉사요금, 생산기업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공업지구내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리기관이 중앙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하며 관리기관에 신고를 전제로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계좌를 둘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에서 얻은 이윤과 소득금을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 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²⁴⁾

3. 예상되는 분쟁유형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에서는 분쟁해결의 대상을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로 규정하고 있다.

24)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

첫째, 개발업자로 지정된 현대아산과 중앙지도기관 간의 분쟁을 예상할 수 있다.

현대아산이 중앙지도기관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 토지이용증을 취득하고 단계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앙지도기관이 현대아산의 개발업자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다른 제3자를 개발업자로 지정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이 중앙지도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과 관련하여(제22조 6항) 적기에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진출 남측기업과 중앙지도기관(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 지역 판매실현과 관련해서도(제22조 7항) 우리 기업과 북한측 당사자(기관, 기업소, 단체 등)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개성공단 진출 남측 기업과 관리기관(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간에는 기업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 준공검사, 토지이용, 하부구조시설관리, 상품의 가격결정, 노동력 공급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²⁵⁾

셋째,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투자가는 남측 기업이 많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가가 제기하는 분쟁사건도 예상된다.

그 이유로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투자가의 범위를 남측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도 투자하여 기업을 창설할 수 있고 지사, 영업소,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외국으로 물자가 나가는 경우(제33조),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해서(제37조), 외화의 반출입 및 이윤의 외국송금과 관련하여(제44조) 외국투자가 제기하는 분쟁사건을 예상할 수 있다.

25) 개성공업지구법 제25조, 제37조, 제40조 참조.

26)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

IV.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재정운영

현재 남북간에는 상사분쟁 해결촉진을 위해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가 발효중이다. 중재위원회합의서에 따라 창설·운영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분쟁해결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관이다.

원칙적으로 중재위원회합의서 발효일(2005.8.1)로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²⁷⁾ 2006년 1월 말까지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나 북한측의 사정으로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유감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과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한다²⁸⁾. 단기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의 상당수는 남한기업이 북한측을 상대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측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1. 중재위원회의 성격

(1)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상사분쟁 해결기구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독자적인 법인능력을 갖는 상사분쟁 해결기구이며 각자 남과 북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27) 중재위합의서 제14조 제4항 :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28) 분쟁해결합의서 제8조.

29)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조 제1항 및 제2항.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남북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³⁰⁾ 중재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³¹⁾

남과 북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공동대표하며, 남과 북은 중재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분쟁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 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이들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는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하였다.³²⁾

중재위원회가 상사분쟁해결기구로서 갖는 주요 업무는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인 중재관련업무로서 중재의 개시, 진행 및 종료절차를 공정·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사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에 중재관리를 위한 제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투자에 따른 권리의 침해로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주관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관정부를 구성할 중재인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각 중재위원회는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각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중재인 중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상대방 중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제기하

30) 분쟁해결합의서 제2조,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제1항.

31) 중재위원회합의서 제9조 제3항.

32)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제3항, 제9조 제2항 및 제4항.

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³³⁾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⁴⁾

(2) 상사분쟁 해결의 정책수립기관

중재위원회는 남북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남북간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³⁵⁾

그렇다면 정책수립의 내용이 되는 업무영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7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시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이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에 가입하는 문제, 남북 중재위원회와 남북한의 상설중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의 체결문제 등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정책적 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실무에 도입하는 문제들을 정책수립의 현안과제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당사자간의 교역 및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33)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및 제5조, 중재위원회합의서 제3조.

34) 분쟁해결합의서 제16조 제3항.

35)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제6항, 중재위원회합의서 제3조 제4항.

통일한국의 중재중심센터로 발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 및 북일간 수교에 따른 경제교류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적 상사분쟁해결 기구로 성장해야 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는 분쟁해결기구로서도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간에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한·중·일 3국간의 FTA체결도 3국간에 민간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³⁶⁾ 따라서 한·중·일FTA가 체결되는 경우에 대비한 무역, 투자 등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의 해결도 염두에 둔 정책수립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 3월 2일자로 발효중인 한·싱가포르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하고 있어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에 따른 분쟁해결에도 대처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의 구성방향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것은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 등 상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해결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일회성, 이벤트성 교류 관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그 자체로 남북간 교류에 해당될 뿐 아니라 남북간 법률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등장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6)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간의 FTA체결을 위한 협상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따른 한중 공동성명(2003. 7. 8, 북경) 제10항에서는 “양측은 한·중·일간의 협력강화가 동아시아 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재위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지명되어야 한다.³⁷⁾

이와 함께 중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여타의 남북대화기관과 달리 남북 경제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체의 정치적 성격이 배제되고 공정한 중재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³⁸⁾

이러한 노력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재위원의 전문적 시견과 안목에 따른 노력과 부합되어 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다. 중재위원장과 위원은 부여된 임기 4년 동안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내외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사계의 인사를 중에서 적격자를 발탁하여 임명하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로서 이들 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이설이 있지만)국제간의 ‘조약’에 해당된다는 점,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중재사무처리기관에서 내린 중재판정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중재인 기피관련 업무와 중재판정취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상사분쟁해결기구”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등법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중재위원장은 상근직으로 하여 중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37) 중재위원회합의서 제2조 제2항.

38) 강병근,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법무부 주최 자료집(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2004. 6. 28,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 p.121.

하고 위원은 과도기적으로 초기단계에는 비상근으로 하고 각자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중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보좌인원 포함)은 중재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의 장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남한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때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남측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위원 4인은 학계, 법조계, 실업계 등 사계의 인사로 적격자를 발탁하여 임명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 중 1인은 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청의 현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위원과 달리 중재인명부를 구성하는 중재인단은 개별적 중재사건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이므로 보다 실무적인 전문성을 구비한 자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과 투자실무의 전문성 뿐 만 아니라 중재실무와 관련 법령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중재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⁰⁾

3. 중재위원회의 재정운영

중재위원회는 위원회의 재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39)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1조 제4항.

40) 장문철 교수의 토론자료 참조(위 ‘법무부 주최 자료집’, p.148).

고 규정하고 있다.⁴¹⁾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국제적 성격을 가진 명실상부한 중재기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기금이 확보되어 운영되기 전까지는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자는 안이 제시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부정적이다. 기금의 사용 용도가 “남북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문화·학술·체육 분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남북 상사중재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⁴²⁾

둘째, 재정은 (남측)중재위원회와 (남측)분쟁사무처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분쟁사무처리기관의 경우를 보면 남북간의 교역 및 투자분쟁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며 중재절차 진행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시설을 뒷받침해야 한다.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서는 중재 전 단계에서의 분쟁해결노력인 “협의에 의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직구성 및 예산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의”的 의미로는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직접 접촉이 되겠지만 분쟁사무처리기관의 알선을 통한 당사자간 협의촉진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의 방식

41)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1조. 한편, 동 합의서 제2조 제7항과 제8항에서는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을 제11조의 위원회 재정과 관련시켜 볼 때 보좌인원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서기”는 유급의 상근직원으로 볼 수 있다.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상의 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 볼 때 서기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 간은 물론이고 남북 중재위원회 상호간의 업무협조에 관련된 제반 실무적인 업무를 서기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2)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참조.

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클레임 알선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한국기업 입주가 늘어나는데 비례하여 분쟁사건의 예방차원에서의 상담(계약서 작성, 대금결제, 기타 관련 법제 문의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대비 및 예산반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인에게 지급하는 수당(보수)이 당사자가 납부한 중재비용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일정수준에서 중재인수당도 일부 보조하는 예산상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⁴³⁾

중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 분쟁사건의 직접적인 처리는 자기측 분쟁처리기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겠지만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업무,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의 권한의 존재,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업무,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관련된 업무, 중재인명부의 확정·등록업무,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에 관련된 업무, 남북간 상사분쟁의 공정·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반 대책수립업무,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남북중재규정 제정과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현안과제

1. 중재규정 제정시 고려해야 할 전제요건

앞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합의하여 제정할 중재규정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지난 반세기간의 남북단절을 청산하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 등 남

43)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인수당 지급시 일정금액을 중재원 자체의 예산으로 별도 보조하고 있다.

북 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에 제도적으로 적용하는 준거 규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중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전제적 요건으로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는 중재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1) 관련 합의서와의 부합성

본 규정은 상위법인 2000년 12월 16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서명되어 2003년 8월 20일에 발효한 남북 간 4개 기본합의서 중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분쟁해결합의서) 및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투자보장합의서)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본 규정은 2003년 10월 12일에 서명되어 2005년 8월 1일자로 발효 중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중재위원회합의서)와도 부합되어야 한다.

(2) 국제성 및 보편성 반영

본 규정은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 및 외국기업도 본 규정을 이용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법상의 투자자에는 남한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이 중재신청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규정은 국제성과 보편성을 가진 중재규정이 되어야 하며 외국의 주요 중재법이나 중재기구의 중재규칙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3) 구체성과 명확성

현재 남북 간에는 본 규정 외에 별도의 시행세칙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규정이 실질적으로 중재법과 중재규칙 양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분쟁해결합의서나 중재위원회합의서는 조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법제도 및 언어의 상이, 예상되는 정치적 긴장 등을 고려할 때 본 중재규정은 절차의 자연 등에 대비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중재절차 진행에서 해석상의 의문이나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4) 남북의 특수성이 반영된 중재규정

본 중재규정은 남북 당국이 지난 반세기 간의 반목과 대립을 청산하고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중재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창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규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한 간에 공동의 재판기관이 없고 법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준사법적 기능(중재판정 취소 등)은 물론 준입법적 기능(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사유를 정하는 경우 등)도 행사한다. 따라서 본 규정에는 상사중재의 국제적 보편성은 물론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2. 중재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현안

남북중재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2년여 전부터 법무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학회를 통하여 중재규정 시안이 발표되고 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⁴⁴⁾ 현재 남북중재규정(안)은 6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

44) 법무부(특수법령과)는 2004년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남북 경험과정에서 예상되는 상사분쟁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에서 장승화 교수(서울대)는 “남북 상사중재규정의 주요쟁점 및 제정방향”이란 논문에서 남북중재규정(안)을 발표하였고 관련 학계의 교수와 학자, 변호사 및 대한상사중재원과 통일부의 관계자, 한국중재학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학회차원에서는 한국중재학회가 2004년부터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

된 방대한 내용이지만 필자는 이 중 중요한 현안인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과 중재지 결정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1) 자정대상기관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에서는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 이는 중재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이며 현실적으로 분쟁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남북 각각의 상설중재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위탁의 구체적 내용은 남북의 각 중재위원회가 합의하여 제정하는 남북중재규정에 반영될 것이다.

남한의 경우 현재 국내외 상사중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남측 중재법상의 법정 상설중재기관이며 지난 40년간 중재경험에 관한 노우하우와 물적 및 인적 시설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대외 경제중재법상의 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 정부는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중재원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⁴⁶⁾

화하고 연구발표를 해왔다.

45)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제1항 및 중재위원회합의서 제10조 제1항.

2)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 간의 관계설정 문제

중재사무처리기관 지정 이후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 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 등 중재사건 서류의 물리적 접수기관은 중재사무처리기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재신청서 등의 서류에 기재하는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중재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할지라고 중재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수신기관이 서류 접수 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심사하여 흠결이 없어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요건구비 여부의 심사, 즉 형식적 심사는 중재실무에서 볼 때 등기우편 등 우편접수로도 행해질 수 있겠으나 주로 중재사무처리 기관의 접수현장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 결정과 관련하여 2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다.

하나의 입장은, 수신기관은 어디까지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⁴⁷⁾ 이는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제1항⁴⁸⁾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은 신청인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갖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접수자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어야 상위법인 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의 내용과도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의견은 수신기관이 중재사무처리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⁴⁹⁾

46) 중재법 제40조-제41조, 동법 부칙 제3항.

47) 장승화, “남북 상사중재규정의 주요쟁점 및 제정방향”, 법무부 제23차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자료(2004.6.28,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 p.25.

48)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중재신청) 1. :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49) 김연호,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한국중재학회 2004년도 남북 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논문집(2004.9.4, COEX 아셈홀), p.11.

현실적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중재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직접 접수하지도 않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재위원회가 중재사무처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접수기관 및 접수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의 양자를 모두 위탁하는 것이 실무에 맞고 행정상의 편의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 찬성하고자 한다.

즉,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중재신청서 등 서류의 물리적 접수 기관은 물론이고 중재신청서 등 제반 서류에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으로 기재되어도(이는 수신기관 겸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이 된다는 의미임) 무방할 것이란 입장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무역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제41조⁵⁰⁾에서는 주무 행정관청인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무역거래자간에 발생한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2조에서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¹⁾

이들 대외무역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인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즉, 시행령 제98조⁵²⁾에서는 분쟁의 당사자가 산업자원

50) 대외무역법 제41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① 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 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51) 대외무역법 제42조(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전 검사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52)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8조(분쟁조정신청) : ① 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1조제4항 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04조⁵³⁾에서는 중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간에 무역거래 또는 선적전검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면 산업자원부장관부령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사건의 접수기관 겸 제출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⁵⁴⁾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 조정 피신청인의 답변, 반대신청, 조정비용 등 모든 절차진행이 중재원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당사자간에 조정이 실패하면 분쟁의 당사자는 최종해결을 위해 중재합의를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이때의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방식, 즉 장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합의가 아니고 현재 발생한 분쟁(현존분쟁)의 해결을 위해 사후에 하는 중재합의이다.⁵⁵⁾

위에서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무역관리규정의 흐름을 무역분쟁 처리와 관련시켜 고찰한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에서는 분쟁처리의 주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이다. 그러나 하위법규인 동법 시행령 및 무

5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5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2-4(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 ①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신청서 5부를 중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재원장은 조정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접수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5) 중재실무에서는 이 사후 중재합의를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이라고 한다. 대외무역법(제41조제4항)상 산업자원부장관이 분쟁당사자에게 사후 중재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업무도 모두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되어 중재원장이 사후 중재합의를 알선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이를 위해 중재원은 중재원 명의로 사후 중재합의를 위한 소정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당사자를 상대로 중재합의 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관리규정에서는 장관의 업무위탁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장”이 무역분쟁 관련서류의 접수기관일 뿐 아니라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심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외무역법상 분쟁처리의 메커니즘(특히 접수기관 및 수신기관의 측면에서)을 남북중재규정에 준용하더라도 흥결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하여금 중재신청서류 등 관련서류의 접수기관 겸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으로 기능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중재지의 결정

앞으로 중재위원회가 설립되고 남북중재규정이 제정되면 남북의 중재신청 당사자는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에 중재신청사건을 접수시킬 것이다. 이어 중재사건의 접수통지, 그에 따른 답변제출이나 반대신청, 중재판정부 구성 및 심리를 진행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질 것이다.

남북간 중재사건에서 분쟁당사자에게 민감한 사안은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가 될 것이며 이에 관한 규정이 남북중재규정에 반영될 것이다. 중재제도는 사적자치가 존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 합의된 곳에서 중재를 진행하면 된다.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에 중재지에 쉽게 합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기 어렵다. 분쟁금액이 크거나 남북간 정치적 긴장이 있는 경우 남북의 당사자가 중재지에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간 중재사건의 중재지 결정 메커니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사중재의 실무적 입장에서 보면 중재지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재기관 간 중재협정 체결을 통해 그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재지에서의 중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중재협정 체결을 통한 중재지 결정방식을 보면 피신청인 소재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방

식, 신청인국가에서 진행되는 방식, 아니면 제3국을 중재자로 하여 진행되는 방식 등이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시장경제권의 국가와 공산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거래, 소위 동서무역(east-west trade)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자로는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중재자로 하는 경우가 많다.⁵⁶⁾

이는 전통적으로 국영무역 위주의 공산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상거래에서는 경제체제가 다르고 상거래 관습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재자’에 관한 협상이 쉽지 않아 도입된 방식이다.

앞으로 남북한 간의 중재사건에서 중재자 결정이 당사자 합의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중재규정의 제정목적이 남북한 간의 이질적 체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가능한 모든 사태의 발생을 예측하여 규정상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중재지 결정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채택할 필요성도 있다.

남북중재에서 중재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국가를 중재자로 하는 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 당사자 자치를 훼손한다는 것과 피신청인주의가 중재관행 또는 무역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⁵⁷⁾ 그러나 당사자합의로 중재지를 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피신청주의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남북중재에 관한 한) 당사자 자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중재지에 관한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에 피신청인의 ‘수도’(서울 또는 평양)를 중재자로 하는 방안과 ‘개성’을 중재자로 하

56) 1950-1960년대 JCAA(일本国제상사중재협회)가 동유럽의 공산사회주의국가와 체결한 중재협정은 모두 ‘피신청인 소재국가’를 중재자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1990년대에 공산사회주의권 국가(러시아, 중국, 혁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와 체결한 중재협정은 모두 중재지 결정에 관한 중재협정으로 피신청인 소재국가를 중재자로 하고 있다.

57) 장승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운영의 과제”, 한국중재학회 2005년도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논문집(2005.8.23-25, 금강산 관광호텔), p.41.

는 방안을 고려대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성공단사업은 현재 남북간 최대의 경협사업이고 본공단 개발이 완료되면 남측 기업의 대대적 진출이 예상되는 곳으로 현재 남측의 정부 및 민간차원의 유관기관이 업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중재지를 “개성”으로 하고 실무상 중재절차 진행은 남북의 중재위원회가 합의하여 공동중재사무국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진행하면 될 것이다. 남북중재규정이 남북 쌍방간에 교환되면 (가칭) 남북공동중재사무소의 설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3. 남북 분쟁해결 촉진을 위한 현안과제

(1) 남북 중재사건과 제3국 중재

북한은 분쟁발생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 최대 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가 확대됨에 따라 중재지를 제3국으로 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부지조성사업이 2007년까지 끝이 나고 다국적기업을 위시하여 외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북한에서의 중재를 기피하는 경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외국계 회사들의 본격적인 제품생산 및 생산된 제품의 외국수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촉진에 대비하여 제3국 중재에 대처하는 중재협정체결을 남북한 중재기관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협영법과 동법 시행세칙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도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⁵⁸⁾ 합작법에서는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

는 것이 실패하면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기업법 및 동법 시행규정에도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인 단독출자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와 북한내 해당기업 내지는 북한 당국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제3국 중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5년 2월에 제정·공포된 대외경제계약법은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⁵⁸⁾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투자관련 법령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경제계약이 규율되어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효력, 계약불이행시의 손해배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의 제정·공포로 인해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을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동서 양 진영의 대표적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의 중재기관 간에 체결된 중재협정은 앞으로 개성공단 분쟁의 제3국 중재에 대비하여 시사 하는바가 크다.

미국중재협회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는 1977년 1월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할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에 관한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⁶⁰⁾

이 중재협정은 그 제목이 나타내듯이 그 채택 여부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중재도 물론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

58)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59)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p.135.

60)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VIII(1983),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pp.299-303.

는 소련연방상공회의소 부설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물론이고 미국중재협회의 규칙에 의거한 중재나, 아니면 피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도 있을 수 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며,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③ 중재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며, ④ 스톡홀름 상업회의소가 중재인 선정권자가 되며, ⑤ 공용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단일 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면 진술, 구두심문 및 중재판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하되 기타 증거서류들은 중재판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번역이 필요 없도록 하였다.

■ 미-소 중재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1977"(prepared by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앞으로 남북 중재사건의 제3국 중재를 고려함에 있어 남북한이 모두 UN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UN차원에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자는 북경으로 하고 중재인선정기관 및 중재기관으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하거나 개성공단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국 청도에서 청도중재위원회(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에 의한 중재진행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⁶¹⁾

61) 협정체결의 당사자는 3국의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청도중재위원회)이 관여하는 3자간 중재협정(tripartite arbitration agreement)의 형식이 될 것이다. 이 3자간 중재협정의 모범으로는 1989년 미국중재협회, 체코상공회의소 및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간에 체결된

(2)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남북 교역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상사분쟁과 투자에 따른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이 있으나 현재 북한은 두 협약에 모두 미가입국이다.

무역 등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과 관련하여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을 위한 뉴욕협약⁶²⁾은 1958년 6월 10일 미국의 뉴욕시에서 국제연합의 주도로 성립된 세계최대의 중재에 관한 다자조약으로 현재 동서, 선후진국을 포함하여 130여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73년 뉴욕협약에 가입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이 협약 가입국간 그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뉴욕협약 가입시 동 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며 ②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유보선언을 하였다.⁶³⁾

남북한 경제교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뉴욕협약 가입현황을 보면 러시아는 1960년에, 중국은 1987년에, 일본은 1961년에, 그리고 미국은 1970년에 각각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⁶⁴⁾

한편, 국제간 투자에 따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주도로 「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가 탄생하게 되었다.

⁶²⁾ 'USA-Czechoslovakia-Austria Tripartite Agreement'를 들 수 있다(ICCA Year Book Vol.XV, 1990, pp.186-192 참조).

⁶³⁾ 뉴욕협약의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다.

⁶⁴⁾ 첫 번째 유보선언을 '相互主義 留保宣言'이라고 하며 두 번째 유보선언을 '商事限定 留保宣言'이라고 한다.

⁶⁵⁾ 러시아(소련 붕괴 후 러시아로 승계)와 일본은 상호주의 유보선언을, 중국과 미국은 상호주의 및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하였다.

이 협약은 약칭하여 워싱턴협약 또는 ICSID협약이라고 하는데 1965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고 1966년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국제간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이다.

무역 등 국제상거래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는 분쟁해결에 있어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법을 준거하고 그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독립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혀 독립된 별개의 중재에 관한 준거법을 제정한 것이 워싱턴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워싱턴협약에 1966년 4월 18일에 서명한 후 1967년 2월 21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년 3월 23일에 발효하였다.

대북 무역과 투자, 특히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가진 외국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중재판정의 국제적 승인과 집행을 담보하는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대북 경제교류 증대 및 그에 따른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장치이며 북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⁶⁵⁾

(3) 남북 중재기관 간 중재협정의 체결

향후 개성공단의 개발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예견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개성공단에서 직접 혹은 남한을 경유하여 남북한철도(TKR)와 중국종단철도(TCR) 및 시베리아종단철도(TSR)로 연결되어 수출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65) 남북경협 4대합의서 중 분쟁해결합의서는 제36조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 불이행시 관할 재판기관에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해당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중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의적 판단이 개재될 여지가 있으므로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와 주요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및 판로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06년 3월 2일자로 공식 발효되었다. 특히 동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 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 및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서유럽국가 중 EU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 2005년 7월 12일에 타결되어 2006년 중에 발효예정인 한-EFTA FTA(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한국과 ASEAN 10개국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의 성격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말까지 한-ASEAN FTA 협상의 최종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ASEAN측과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원칙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싱가포르, EFTA와의 FTA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와 ASEAN과의 FTA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장과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⁶⁶⁾

66) 한국정부가 중국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중국정부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는 뉴스가 있다(조선일보 : 2006. 7. 4자 1면).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수입되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개성공단의 해외 판로확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와 함께 북미, 북일 간에 정식으로 수교가 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이 활성화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서경제교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대내외적 상사분쟁의 해결촉진을 위해 남북의 중재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협력의 연결고리가 중재협정이란 점에서 중재협정 체결이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남북의 중재기관이 중재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분쟁해결 합의서의 관할이 아닌 분쟁사건 즉,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분쟁사건의 해결에 기여해야 하며, 또한 중재협정 체결을 통한 분쟁해결 촉진이 개성공단을 축으로 하는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VI. 결 론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 선언’ 이후이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 핵문제 등 정치적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크게 증대되었다. 1989년 1,872만 달러로 시작된 남북교역 규모는 크게 증대되어 2004년 교역액이 6억 9,704만 달리이며 2005년에는 10억 5,575만 달러로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1989년 대비 60배의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무역액에서 남북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

대는 물론 남북 경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경미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남북한 교역이 북한 전체무역규모의 1/4 정도로 남한은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상대국이 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왔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 간에 제도적인 분쟁해결장치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교역과 투자에 종사하는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1992년 9월 17일자로 당시 남한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총리 간에 합의된 부속합의서⁶⁷⁾ 제1장(경제교류·협력) 제1조 제12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속합의서 체결 다음 달인 10월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년 후(1993)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을, 그리고 2년 후(1994)에는 1984년에 제정된 기존의 합영법을 개정하였으며 3년 후(1995년)에는 대외무역관련 상사계약의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과 중재 중 어느 하나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제3국 중재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전 해인 1999년에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외자유치관련 법규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대외경제분쟁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해 동 중재법의 내용을 현대적 중재제도에 부합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고 하겠다.

경제적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의 가시적 성과로는 분쟁해결합의서를

67) 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비롯한 남북경협 4개 경협합의서인데 1992년 상기한 남북한 간 부속 합의서 합의 이후 실로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남북한 간에는 분쟁해결합의서를 포함한 4개 경협합의서가 2003년 8월 20일에 발효 되었고 2005년 8월 1일자로 중재위원회합의서까지 발효되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남북한 간의 교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 을 남북한이 직접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중재위원회합의서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기구인 중 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 남 북중재위원회가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남북한 간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상사분쟁해결기구로서, 또한 상사분쟁 해결의 정책수립기관으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남북 당국은 제도적인 상사분쟁해결제도의 구축이 상거래의 속성상 남북한 경제교류와 대북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재위원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남북 중재규정 제정에는 국제성과 남북한의 특수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남북 중재규정은 상위 법규범인 분쟁해결합의서와 중재위원회합의서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성과 보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이질적 법적 환경과 경제체제 및 상관행에 따라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재규정의 내용은 중재절차의 모든 단계와 사태를 구체적으로 예상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남북간 언어상의 상위점도 있기 때문에 용어의 명확성도 요구된다.

셋째,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에 있어 남한의 경우는 대한상사중재

원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남측 중재법상의 법정 상설중재기관으로 설립 이후 지난 40년간 국내외 중재경험에 관한 노우하우와 물적 및 인적 시설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Court of Arbitration), 미국중재협회(AAA),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등 권위있는 국제 중재기관과의 중재협정을 통해 국제간 분쟁해결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으로서는 대외경제중재법상의 상설중재기관인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론이 있지만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중재신청 등 분쟁사건 서류의 단순한 접수기관 뿐만 아니라 서류상에 기재되는 수신기관(접수대상기관)이 되어 접수서류의 형식적 심사권도 함께 위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재지 결정에 있어 당사자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가 없으면 피신청인주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재지를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로 결정하는 방식, 즉 피신청인 주의는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권의 국가와 공산사회주의권 국가 간의 동서무역에서 발생하는 중재사건의 중재지 결정에 이용되어 왔다. 남북 중재사건에서 경제체제가 다르고 상관습이 상이한 상황下에서 중재지가 당사자 합의로 결정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사자 합의 실패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방식도 분쟁금액이 크거나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에 처해있을 경우에 판정부의 중재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남북한 중재기관 간에 중재협정체결을 통한 분쟁해결노력이 요청된다.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와 함께 북미, 북일간에 수교가 되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서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싱가포르FTA에서와 같이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가 인정되면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이

다. 이 경우 남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중재를 진행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바 남북한 및 관계국 중재기관간의 중재협정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중재관련 국제협약에의 조속한 가입이 요청된다.

남한기업은 물론이고 대북 무역과 투자에 관심을 가진 외국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북 경제교류의 촉진을 위해서, 또한 북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북한의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선결과제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5.
- _____ , 「외국중재법규집 제1집」, 2005.
- 대한상사중재원·한국중재학회, 「주석 중재법」, 2005.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
- 신한동, “북한의 대외개방과 상사중재제도”, 「중재」, 제295호(2000 · 봄), 대한상사중재원.
- 장문철 외, 「UNCITRAL모델중재법의 수용론」, 세창출판사, 1999.
- 장효상, “북한의 대외경제중재”, 「중재」, 제297호(2000 · 가을), 대한상사중재원.
- 강병근,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방안”, 법무부 주최 자료집(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2004. 6. 28,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
- 김명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해설”, 「중재」, 제311호(2004 · 봄). 대한상사중재원.

- 김상호, “남북한 및 한·러 중재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러극동학술교류 학회 2006년 국제학술대회논문집 (2006.5.1, 전남대).
- _____, “개성공단 개발과 상사분쟁의 해결”, 한국중재학회 2006년 국제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 논문집 (2006.5.13, 고려대).
- _____,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중재센터 설립방안”, 한국국제상학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6.9, 목원대).
- 김연호, “남북중재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한국중재학회 2004년도 남북 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논문집 (2004.9.4, COEX 아셈홀).
- 이종근,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전략”, 한국수출아카데미 창립7주년기념 개성공단생산품 수출전략세미나논문집 (2005.6.7,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 장승화, “남북 상사중재규정의 주요쟁점 및 제정방향”, 법무부 제23차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자료 (2004.6.28, 정부과 천청사 국제회의실).
- _____,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운영의 과제”, 한국중재학회 2005년도 남북 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논문집(2005.8. 23-25, 금강산 관광호텔).
- 최수영, “남북 경협 활성화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중재학회 주최 논문집(2005년도 남북 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 2005.8. 23-25, 금강산 관광호텔).
-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 2005. 6월, Ver 22.
-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VIII(1983), Deventer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 _____, Year Book Vol.XV(1990).
- _____,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IV(1979).
- Piter Sanders, “Commentary on UNCITRAL Arbitration Rules”, ICCA Yearbook Vol. II(1977).
- Wolfgang Peter, “Arbitration and Renegoti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1995.

〈남북한 중재관련 법규 및 합의서〉

- 한국 중재법(개정 1999.12.31. 법률 제6083호)
- 한국대외무역법·시행령·무역관리규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2000.4.27. 대법원승인)
- 북한 외국인투자법(1992)
- 북한 합영법(1984 제정, 1994개정)
- 북한 합작법(1992)
- 북한 외국인기업법(1992)
- 북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
- 북한 대외경제계약법(1995)
- 북한 대외경제중재법(1999)
- 북한 개성공업지구법(2002)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사이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2000)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12.13)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 9.17))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중재관련 국내외 협정 및 FTA 등 자료〉

- 한·일 중재협정문(1973.10.26)

- 한-미 중재협정문(1974.11.19)
- 한-헝가리 중재협정문(1990.8.28)
- 한-루마니아 중재협정문(1991.6.20)
- 한-불가리아 중재협정문(1991.6.21)
- 한-폴란드 중재협정문(1992.9.10)
- 한-중국 중재협정문(1992.12.15)
- 한-베트남 중재협정문(1993.12.20)
- 한-러시아 중재협정문(1994.5.16)
- 한-ICC 중재업무협조약정문(1978.5.29)
- 한-스웨덴 중재업무협조약정문(1995.9.27)
- 한-오스트리아 중재업무협조약정문(1996.7.18)
- 한-헝가리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문(1989)
- 한-헝가리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문(1989)
- 한-중 무역협정문(1992)
- 한-중 투자보장협정문(1992)
- 한-소 무역협정문(1990)
- 한-소 투자보장협정문(1991)
-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워싱턴협약)
-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뉴욕협약)
- 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1977 (prepared by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greement between the 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Hungary and Japan(1961. 11.13)

- Agreement between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Chamber of Commerce of the Rumanian People's Republic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Japanese Physical and Legal Persons and State Enterprises for Foreign Trade of the Rumanian People's Republic(1957.5.22)
- Agreement between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Chamber of Commerce of Czechoslovakia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Japan and Czechoslovakia(1957.3.11)
- Agreement between the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 and Japan (1961.7.6.)
- Agreement between the Polish Chamber of Foreign Trade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regarding the Arbitration Clause to be inserted in Trade Contracts between Poland and Japan (1957.5.8.).
- 한-싱가포르FTA(2005)
- 한-ASEAN Framework Agreement(2005)
- 한-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2005)
- 조선일보 : 2006. 7. 4, 1면

ABSTRACT

A Study on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Sang-H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Also,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south-north Korea's cooperative tasks to promote the disputes settlement, includ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Rules.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the Authorities concerned of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titled "Agreement on Settlement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s" on December of the same year. As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said Agreement, the South-North Authorities have signed an another agreement called "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on October, 2003, which is becoming vital importance for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aeseong, a city surrounded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a symbol of inter-Korean tensions, is now turning into a peace zone where thousands of North and South Koreans are working side by sid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driven by the logic and economic necessity of

cooperation, has been steadily moving forward since the North designated it as a special economic zone and has enact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its development.

Under the situation, the matter of primary concern is how to organize and conduct the Arbitration Commission for the prompt and effective settlement of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s.

First of all, the South-North Authorities should recognize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such as arbitration and mediation to be made by the Arbitration Commission would promote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the south-north trade and investment. In this connecti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should be designated as the arbitral institution of the south Korean side under the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The KCAB is the only authorized arbitral organization in South Korea to settle all kinds of commercial disputes at home and abroad.

Key Words :dispute settlement, South-North Arbitration Commission
and Rule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rbitration